



# LPG법 시행규칙개정(안)

● 산업자원부 ●

최근 산자부가 개정작업중인 LPG법 시행규칙(안)을 게재한다. 이 내용은 추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1. 개정이유

인천 다가구주택 가스폭발사고대책의 일환으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추가하고 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배달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자동차의 관리제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

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49조 제1항)

나. 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당해 LPG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56조의 2제6호)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서 보호시설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기준을 신규 허가 및 사업소이전으로 인한 변경허가시에만 유지되도록 함(안 별표 3 제1호가목)

라. 가스공급자에게 사용자를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사용시설에 상호·동·호수를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사용 및 점검요령 등이 기재된 안전수칙을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신설함(안 별표 17 제2호 바목)

마.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스배달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신설함(안 별표 19 제4호 나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p> <p>1. ~ 5. (생략) 〈신설〉</p>	<p>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p> <p>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사망당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 승용자동차를 보호자가 상속하여 소유·사용하는 경우</p> <p>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사망당시 보호자 소유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 보호자가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사용하는 경우</p>	<p>○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당해 LPG자동차를 장애인 등의 유가족이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관계로 LPG자동차의 강제매각, LPG연료장치 철거 등의 문제가 있어 유가족에게 당해 LPG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별표 3】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제8조제1호관련)</p> <p>1. 시설기준</p> <p>가. 용기충전시설</p> <p>(1) 안전거리</p> <p>(가) ~ (다) (생략)</p> <p>(라)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이입·충전장소는 그외면(탱크로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p>	<p>【별표 3】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제8조제1호관련)</p> <p>1. 시설기준</p> <p>가. 용기충전시설</p> <p>(1) 안전거리</p> <p>(가)~(다) (현행과 같음)</p> <p>(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 또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이입·충전장소의 ----- ----- ----- 50m 이상의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 ----- ----- ----- ----- -----</p>	<p>○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신규허가 또는 사업소이전으로 인한 변경허가시에만 유지되도록 함.</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별표 17】액화석유가스공급 방법(제45조관련)</p> <p>1. (생 략)</p> <p>2. 용기에 의한 공급기준 가. ~ 마. (생 략) 〈신 설〉</p>	<p>【별표 17】액화석유가스공급 방법(제45조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용기에 의한 공급기준 가. ~ 마. (생 략) 바. 기타</p> <p>(1) 가스공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연결부와 가장 가까운 호스 또는 배관에 상호 또는 동·호수 등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가) 동일 건축물내에 다수의 수요자가 있는 경우</p> <p>(나) 2 이상의 건축물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설비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p> <p>(2) 가스공급자는 안전사용 및 점검요령, 누출시의 응급조치 및 가스공급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전수칙에 관한 계도물을 제작하여 수요자시설의 연소기 또는 중간밸브 주위에 부착하여야 한다.</p>	<p>0인치 다가구주택 가스폭발사고(2002.3.20)대책의 일환으로 가스공급자에게 사용자의 동·호수 표기 의무와 안전수칙 계도물 제작·부착의무를 부여</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별표 19】안전교육 실시방법 (제54조제1항관련) 1. ~ 3. (생 략) 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기간</p>	<p>【별표 19】안전교육 실시방법 (제54조제1항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p>	<p>○인천 다가구주택 가스폭 발사고(2002.3.20)대책의 일환으로 가스배달원 특 별교육제도를 신설</p>																								
<table border="1" data-bbox="171 493 487 819"> <thead> <tr> <th>교육과정</th> <th>교육대상자</th> <th>교육기간 등</th> </tr> </thead> <tbody> <tr> <td>가.정기교육</td> <td>(생 략)</td> <td>(생 략)</td> </tr> <tr> <td>나.특별교육</td> <td>(1)(생략) (2)액화석유 가스운반자 동차운전자  (3)·(4)(생략)</td> <td>(생 략)</td> </tr> <tr> <td>다.양성교육</td> <td>(생 략)</td> <td>(생 략)</td> </tr> </tbody> </table>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정기교육	(생 략)	(생 략)	나.특별교육	(1)(생략) (2)액화석유 가스운반자 동차운전자  (3)·(4)(생략)	(생 략)	다.양성교육	(생 략)	(생 략)	<table border="1" data-bbox="528 493 827 858"> <thead> <tr> <th>교육과정</th> <th>교육대상자</th> <th>교육기간 등</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같음)</td> </tr> <tr> <td>나.----</td> <td>(1)(현행과 같음) (2)액화석유가스 가스운반자동 차운전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달원 (3)·(4)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같음)</td> </tr> <tr> <td>다.----</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같음)</td> </tr> </tbody> </table>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나.----	(1)(현행과 같음) (2)액화석유가스 가스운반자동 차운전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달원 (3)·(4)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정기교육	(생 략)		(생 략)																							
나.특별교육	(1)(생략) (2)액화석유 가스운반자 동차운전자  (3)·(4)(생략)		(생 략)																							
다.양성교육	(생 략)	(생 략)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나.----	(1)(현행과 같음) (2)액화석유가스 가스운반자동 차운전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달원 (3)·(4)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